



북한 건설: 법 제도 현황과 남북경협

2018. 7. 12.

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

이찬호 외국 변호사

차 례

- 최근 한반도 정세 : 전환기적 상황
- 판문점 선언 :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시발점
- 판문점 선언 : 경제협력분야 합의 사항
- 김정은 북한의 경제상황
- 북한 경제의 딜레마와 북한의 시도
- 북한의 투자환경
- 대북경협 의 실제: 남북경협
- 대북경협 의 실제: 남북경협 의 특징
- 대북경협 의 실제: 남북경협 의 법제도 (1)(2)
- 대북투자의 절차 법 제도 (남북교류협력법)
- 대북경협 의 실제: 북한의 법령
- 그동안 남북경협 의 교훈과 시사점
- 최초 남북경협 의 환경
- 남북경협 추진 의 리스크
- 대북 투자의 RISK 발생 사례 (1)(2)(3)
- 대북 투자의 Risk Management 전략 (1)(2)
- 대북 투자 Risk Management 의 10개 체크포인트
- BKL 남북관계특별팀 소개

전환의 방향 : 정상화 / 협력

- 남북관계 정상화 : 한반도 전쟁 상태 -> 평화상태로 전환
- 신 동북아 질서 모색 : 낡은 냉전체제구조를 극복, 새로운 틀을 모색
- 새로운 동북아 협력 관계 모색 : 역내 국가들의 다자간 협력 관계 모색

최근 정세 변화의 특징

- 본질적, 근본적 정세의 변화
(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체제보장의 교환,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)
- 정세변화의 확장성 (남·북한 → 북·중 / 한·미 / 한·중·일 / 미·일 → 남·북·미·중·러·일)
- 정세변화의 신속성 (남·북(4.27), 북·중(5.7), 한·중·일(5.9), 한·미(5.22), 북·미(6.12) 정상회담)

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

- 남북경협과 국제경제협력을 연계하여 역내 경제공동체 실천
- 3개 Belt를 축으로 경제협력 추진
 - ① 환동해 경제 Belt (일-남-북-중-러)
 - ② 환황해 경제 Belt (남-북-중)
 - ③ 남북한 접경지역 평화벨트
- 협력분야: 교통협력, 자원 개발, 에너지, 관광, 공단, 농수산업 협력 등
- 본격 추진을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, 대북 경제제재 완화 · 해소가 관건



철도 · 도로 연결 및 현대화

- 현재 남북간 철도 ·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경의선 (서울-신의주), 동해선(부산-나선) 부터 현대화
- 중국철도(TCR), 러시아 철도(TSR)와 연결, 유럽으로 이어지고 대륙 횡단철도망 구축

‘10.4’ 선언 합의 사항 적극 추진

- 2007년 노무현-김정일간 ‘10.4선언’ 기합의 사항 추진
 - 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
 - ② 개성공단 2단계 사업 추진
 - ③ 북한에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

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

- 서울 · 평양 상주 대표부 교환 설치의 전단계로서의 의미

고위급회담 등 분야별 대화 추진

- 경제협력실천을 위한 분과위원회가 고위급 회담 산하에 설치될 가능성

최근 북한의 경제 상황 변화

- 김정은 경제는 김정일 경제보다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
 - 김정일의 '선군경제전략' 에서 '병진전략' 으로 전환 (군수산업 → 민수산업)
 - 김정일 시대 GDP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
- 시장화 현상이 정착되어 사회경제적 기능을 담당하는 등 시장의 질적 구조화 진행 중
- 시장적 사고의 확대(2009년 화폐개혁 실패의 원인의 주된 원인), 실용주의적 경제정책 도입
- 김정일 시대 식량의 절대적 부족 상황의 극복(민생 안정)

대북 제재의 직접적 영향

- 대중 수출의 감소(연간 30%)
- 중국 · 러시아 · 중동 · 동남아 · 아프리카 등 해외 노동자 송금 중단(연간 수익불 규모)

Dollarization / 위안라이제이션

- 주민들의 '북한 원화'에 대한 불신
- 심각한 이중 경제 상황 → 체제 안정화를 위한 시급한 해결 과제로 부상

경제적 생존이 체제보장의 관건 요소화 (북미회담으로 정치군사적 체제 보장은 확보)

- 패러다임의 변화 가능화
- 김일성 (모기장론) → 김정일 (우리식 변화) → 김정은 (해외 경제 재건 모델의 모색)

기회요소 (Opportunity)

- 풍부한 지하자원(7조 달러), 낮은 임금(개성공단 월 150불 내외)
- 양질의 노동력, 언어장벽 없음
- 토지 이용의 용이, 민원발생 수준 낮음
- 체제 특성상 신속한 사업 추진 용이

위험요소 (Risk)

- 정치·외교 및 남북관계 상황 민감 (정치적 리스크)
- 인프라 수준이 낮음 (전력, 철도, 도로, 항만 등)
- 법·제도 미비 및 법적 안정성 미확보
- 투자 보장, 과실 송금 등에 대한 신뢰성 미흡
- 대북 제재 하에 있으며, 내수시장 및 해외 판로 불충분

남북경협의 연혁

- 1988. 7. 7 대통령 특별선언: “남북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간 교역은 민족내부교역으로 간주함”
- 1989. 11.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방북
- 1990. 9. 남북교류협력법 제정
- 1998. 11. 금강산 관광사업 시작
- 2000. 6. 제1차 남북정상회담, 6.15 공동선언
- 2003. 6. 개성공단 착공식
- 2007. 10. 제2차 남북정상회담, 10.4 공동선언
- 2008. 7.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
- 2010. 5.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협 중단(5.24 조치)
- 2016. 2. 개성공단 가동 중단
- 2017. 4. 제3차 남북정상회담, 판문점 선언

남북경협을의 특징

- 민족내부거래 (무관세, 북한방문시 여권 대신 방문증명서 발급, Visa대신 초청장)
 - * 남북한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 (남북기본합의서, 1992)
- 경제구조의 상호 보완성 활용 (남한의 자본·기술 + 북한의 노동력)
- 남북관계 상황 변화에 영향, '정경분리의 원칙' 적용에 한계
-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법제도 구축 미진

남북경협의 법제도

- 3원적 구조: 남한법제 – 합의서 – 북한 법제
- 합의서를 매개로 남한과 북한의 법제가 연결되나, 실제로는 남한과 북한 영역에서 자기 법령을 적용

남북경협 분야 남한의 법제도

-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(1990년 제정)이 기원
-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남북경협 추진
 - 민간사업자의 남북경협사업 내용을 정부가 Screen
-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배제
 - 국가 보안법상의 처벌 조항 불적용

남북경협 추진 절차

- 북한주민 접촉(통일부 신고) → 북한측과 사업 협의 → 북한방문(통일부 승인) → 북한 현지 답사 및 사업계획 협의 → 사업계약서 작성 → 남북경협 추진(통일부 승인) → 경협 사업 개시
- 북한주민 접촉, 북한 방문, 남북경협 단계별로 남한 정부에 신고 또는 승인 신청
-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북한측 사업자가 승인을 받는 것으로 보임.

남북경협에 대한 재정 지원 기반

- 남북협력기금
 - 대출, 손실보상, 비용지원 등 유상 및 무상지원
 - 대부분 정부 재정에서 충당
 - 금강산 관광사업, 개성공단 사업 / KEDO 경수로 사업 등 지원이 대표적 지원 사례

대북투자의 절차 법 제도(남북교류협력법)

북한 주민 접촉 신고

: 일체의 의사 전달 행위

북한 방문 / 남한 방문

: 초청장 + 방문증명서

물자 반출 ·반입

: 반 ·출입 승인서 / 관세 없음

수송장비 운행

: 철도 ·차량 ·선박 운항 승인서

협력사업

: 종합적 대북투자사업 (개성공단 / 금강산 관광 등)

남북경협 분야 북한의 법제도

- (북남경협)
 - 개성공업지구법(2002), 금강산관광지구법(2002, 2011)
 - 북남경제협력법(2005)

특구법

- 개성공업지구법(2002), 금강산관광지구법(2002, 2011)
- 라선경제무역지대법(1993),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(2002)

(대외투자) 합영법, 합작법, 외국인기업법

- 합영: 공동투자+공동운영
 - 합작: 공동투자+(북)단독운영
 - 외국인기업: 외국인의 북한내 현지법인

남북경협의 교훈: 남북경협의 한계

- '정경분리 원칙' 적용의 한계: 정치적 Risk 상존
- 투자보장 체제 미비
 - 남북간 "투자보장합의서"가 채택되었으나 북한 불이행
 - 금강산관광사업 중단, 개성공단 사업 중단 등
- 북한의 인프라 부족, 법치주의 미비
 - 초기 투자 부담 과다, 북한 행정 당국 조치의 불가 예측성

시사점

- 사업 대상 분야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, 관행·정책 방향 등 사전 숙지 필요
- 대규모 신규사업의 경우 법제가 미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, 북한의 입법까지 함께 지원
- 일방적 국유화 조치, 사업 중단 조치에 대처하고 투자보장에 관한 법률적 방안 수립 필요
- 대북 투자 Risk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 수립 필요

1. 한반도 체제의 근본적 변화 (정전체제 → 평화체제)

- 정치 · 군사적 요인의 약화 예상, 불안 리스크 감소

2. 정부의 '신경제지도 구상' 추진 의지 + 국제 협력

- H자 협력(동해, 서해, DMZ 협력축)을 통한 남북 협력 + 국제 협력 모델
- 국제 협력 요소가 가미되면서 투자 안정성 제고

3. 새로운 차원의 남북경협시대

- 투자 보장 등 법 제도의 높은 수준에서의 구축 기대
- 남북한 경협제도의 쌍방적 효력 확보 방안 연구 필요
-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가동 / 남북 고위급 회담, 분기별 회담 등 가동

제도적 리스크

- 남한법 - 북한법 - 남북 합의서의 3원적 법 제도 적용
- 과잉 규제 · 중복 규제 문제 + 합의서 미이행으로 인한 남북경협제도의 불완전성 상존

남북경협 사업자 지위의 비대칭성

- 북한 체제의 특성상 북한 사업자는 당국 또는 준당국
- B to B 비즈니스는 사실상 부존재 (B to G)
- 사업추진 및 참여에 있어 독점(북한) + 경쟁구조(남한)

투자보장 · 분쟁 해결 장치의 불안전

- 남북한 투자보장 · 분쟁 해결 합의서 미이행 사태
- 판결 · 중재 판결의 북한 내 집행 의문

정경 분리 vs 정경 연계 논의 등 경제외적 RISK 상존

Dollarization 과소평가로 수익 실현 실패

- 북한의 달러 환율: (공식) 1\$=99.78 북한원, (시장) 1\$=8,600 북한원
- 북한 진입 시는 공식 환율, 북한 Exit 시는 시장 환율 적용: 80여배 또는 1.25%의 2중 환율 구조
- 북한의 달러화 지급 부족 문제와 겹쳐 정당한 환율 계산에 의한 기업의 과실 송금에 한계
- A사 사례: 장부상 수익금 5억불 → Exit시 약 600만불 ($5\text{억불} \times 0.0125 = 625\text{만불}$)
 - * Washington Post 보도: "Thanks for the cellphone. We will take the company, too"
 - 북한 내수 판매를 통한 수익은 별다른 의미가 없음. 수익 실현(과실 송금)이 중요함.

☞ 북한과의 사업시 북한 내수 시장 겨냥은 당분간 바람직하지 않음

☞ 북한과의 계약시 달러화, 유로화, 위안화 베이스로 계약 필요

☞ 수익 대외 송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계약서에 명기 필요

사업자 지위의 비대칭성 사례

유형

▶ 남측 사업자 간의 경쟁 유발, '입북료' 선납 요구

▶ 남측 사업자의 사업장 방문을 위한 방북 요청 거절 (초청장 발급 거절)

▶ 북한 측의 과도한 가격 요구

▶ '정세의 변화'를 이유로 사업의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

▶ 북한의 계획 변경을 이유로 한 사업 철수를 요구

경영 외적 / 경제 외적 요인으로 인한 사업 중단 사례

- 금강산 관광산업 / 개성공단 사업 사례
- 북한 핵문제, 미사일 문제 해결 과정
-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
- 대북 제재 상황 등이 주요 변수

북한 체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사건 · 사고의 발생

- 돌발 상황의 발생(북한 현지 근무자, 방문자의 '반 공화국' 행위)
- 북한 측 근로자와의 갈등
- 북한 체제 폄하 발언 등

남북 경험 법 · 제도 미비

- 투자보장제도의 미비, 국내법상 보상 근거가 없음
 - 현재 3개 보상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법안 심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
- 분쟁해결을 위한 남북한의 분쟁해결기관 미가동
- 북한 RISK에 기인한 투자금 회수 불가능으로 회사 폐업

전략 ①

대북투자 사전준비 과정에서 RISK 분석

- 투자 분야별 북한의 산업 상황, 관련 법령 등 조사 및 학습
-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현실적 RISK 요소 예측 및 대책 마련

전략 ②

투자 ITEM의 발굴 및 실행계획 수립

- 기업의 전문분야 중심으로 발굴
- 실행계획은 북한 접촉 → 협상 → 계약 → 정부 승인 등 단계별로 수립
- 정부 사업 참여 수준으로 할 것인지, 독자적 사업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경영적 판단 필요



전략 ③

점진적, 점증적 사업 추진 방안의 강구

- 북한과의 신뢰 구축이 대북경협사업에 있어서의 KEY 요소
- 점진적으로 신뢰를 구축하여서 사업 범위를 늘려가는 전략이 현명

전략 ④

전문가의 자문 하에 사업 추진

- 북한 전문가, 법률전문가 등과의 협업체제를 유지
- 기관장, 사장 직속 사내 학습조직, TF 구성 등을 통해 전문가 자문 채널 운영



CHECK POINT ★

- ☑ ① 사업 초기 중개인 활용이 불가피할 시,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을 선정
- ☑ ② 북한 사업 상대방과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나면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끔
- ☑ ③ 사업추진 결정 전에 사업의 타당성, 실현 가능성, 정부승인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 전문가와 협의
- ☑ ④ 북한과의 계약서 체결시 상세하게 작성하여 리스크를 최소화 함
- ☑ ⑤ 대규모 투자일 경우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북한 법령과 인프라 구축 방안도 함께 수립하여 진출
- ☑ ⑥ 해당 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여도를 함께 고려
- ☑ ⑦ 사업 중단 등 상황에 대한 PLAN을 수립
- ☑ ⑧ 가능하다면 외국기업과의 공동 진출 방안도 고려
- ☑ ⑨ 대북 제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 청취
- ☑ ⑩ 정부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할 경우, 적극적인 대정부 의견 개진을 통해 업계 공동 대처

BKL 남북관계특별팀 소개

❖ 전문가



오 양 호 대표변호사

T. 02.3404.0128 F. 02.3404.7308 E. yangho.oh@bkl.co.kr

- 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(1989-현재)
-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(2001-2004)
-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위원(2004-2016)
- 방송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(2004-2016)
-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 위원(2017-현재)



유 욱 변호사

T. 02.3404.0140 F. 02.3404.0101 E. yoo.wook@bkl.co.kr

- 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(1993-현재)
- 통일부 개성법률자문회의의 위원(2005-현재)
-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(2007-현재)
- 법원행정처 통일사법 연구위원회 위원(2011-현재)
- 북한법연구회 감사(2018-현재)



이 찬 호 외국변호사

T. 02.3404.7581 F. 02.3404.0101 E. chanho.lee@bkl.co.kr

- 통일부 통일정책실 정책기획과장(2000)
- 통일부 교류협력국 교류1과장(2002)
- 통일부 교류협력국 사회문화교류협력과장(2004-2005)
-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관리과장(2008)
-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정책자문위원(2017-현재)



신 제 윤 고문

T. 02.3404.7520 F. 02.3404.7310 E. jeyoon.shin@bkl.co.kr

- 기획재정부 제1차관(2011-2013)
- 금융위원회 위원장(2013-2015)
- 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 고문(2017-현재)



김 정 관 고문

T. 02.3404.7513 F. 02.3404.0803 E. junggwan.kim@bkl.co.kr

-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개발본부장(2007-2008)
-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(2009-2011)
- 지식경제부 제2차관(정무직공무원)(2011-2011)
- 한국무역협회 부회장(2015-2018)
- 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(2014-2015, 2018-현재)



허 경 욱 고문

T. 02.3404.7504 F. 02.3404.7304 E. kyungwook.hur@bkl.co.kr

- 대통령실 국책과제1비서관(청와대)(2008-2009)
- 기획재정부 제1차관(2009-2010)
- 한국 OECD 대표부 특명전권대사(파리, 프랑스)(2010-2013)
- AMRO 자문위원회 자문위원(2014-현재)
- 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(2015-현재)



김 근 수 고문

T. 02.3404.7511 F. 02.3404.7604 E. keunsoo.kim@bkl.co.kr

- 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(2016-현재)
- 여신금융협회 회장(2013-2016)
-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(차관급)(2010-2013)
-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사업지원단장(1급)(2009-2010)
- 기획재정부 국고국장(2008-2009)



한 대 우 고문

T. 02.3404.7502 F. 02.3404.7305 E. daiwoo.han@bkl.co.kr

- 한국산업은행 부행장/기업금융(2009)
- 한국산업은행 부행장/투자금융(2010)
- 한국산업은행 부행장/자본시장(2011-2013)
- 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(2013-현재)

BKL 남북관계특별팀 소개

강 의 모 외국변호사

T. 02.3404.0290 F. 02.3404.7688 E. edward.kang@bkl.co.kr

- 법무법인 울촌 외국변호사(2009-2010)
- 씨티그룹(한국) 상무(2010-2013)
-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(2013-2016)
- 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(2016-현재)

김 영 모 외국변호사

T. 02.3404.0255 F. 02.3404.7304 E. youngmo.kim@bkl.co.kr

- 경제기획원(대외경제조정실/주제네바대표부), 재정경제부(국제금융국/경제협력국), 금융위원회 근무(1987-2008), 한-미 FTA · 한-EU FTA 서비스협상 수석대표
- 경제규제행정컨설팅(ERAC) 행정사사무소 대표(2015-2017)
- 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(2008-2014, 2018-현재)
- 금융투자협회 공익이사(2017-현재)

도 건 철 변호사

T. 02.3404.0142 F. 02.3404.7310 E. gunchul.do@bkl.co.kr

- 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(1993-현재)
- Gale International Korea 법무담당 부사장(2008-2009)
- 새만금 개발청 투자유치기획과 자문위원(2014-현재)
-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위원(2016-현재)
-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외도시개발자문위원회 위원(2016-현재)

박 진 표 변호사

T. 02.3404.0677 F. 02.3404.0803 E. chinpyo.park@bkl.co.kr

- 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(2004-현재)
- 국민연금공단 대체투자위원회 위원(2014-현재)
- 전력법 포럼 한국전력공사 추천위원(2015-현재)
- 한국가스공사 제5기 및 가스시장 발전전략 자문위원회 위원(2016-2017)
-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에너지 전문위원회 전문위원(2017-현재)

양 은 용 변호사

T. 02.3404.0670 F. 02.3404.0803 E. eric.yang@bkl.co.kr

- 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(2015-현재)
-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(2015-2017)
-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(2015-현재)
- 아시아태평양지역법률가협회(Law Asia) 집행위원회(Executive Committee)위원(2016-현재)
-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(2017-현재)

이 승 교 외국변호사

T. 02.3404.0276 F. 02.3404.0803 E. seungkyo.lee@bkl.co.kr

- 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(2014-현재)
- KDI 예비타당성 조사관련 위원(2016-현재)
- 동북아 슈퍼그리드 법률/계약 분과 전문위원(2016-현재)
- 해외사업 심의위원회 외부 심의 위원(중부/남부/동서 발전)(2015-현재)
- 한국전력공사 해외사업부 해외계약담당(발전/자원개발 분야)(2008-2014)

이 윤 남 변호사

T. 02.3404.0687 F. 02.3404.0803 E. younnam.lee@bkl.co.kr

- 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(2016-현재)
- 기획재정부 연금투자자문 운영위원회 위원(2017-현재)
-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법률전문위원(2016-현재)
-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비즈니스자문단 자문위원(2013-현재)
-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(2013-현재)

이 준 기 변호사

T. 02.3404.0152 F. 02.3404.0803 E. joonki.yi@bkl.co.kr

- 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(1996-현재)
- 산업자원부 고문변호사(2003-2004)
- 대한변호사협회 환경과에너지연구위원회 위원장(2012-2014)
-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(2013-2016)
-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 혁신TF 위원(2017-현재)

이 후 동 변호사

T. 02.3404.0134 F. 02.3404.7692 E. hoodong.lee@bkl.co.kr

- 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(1991-현재)
- 일본 Mori Hamada & Matsumoto(Tokyo), Oh-Ebashi(Osaka), Matsuo & Kosugi(Tokyo) 근무(1997-1998)
- 태평양 도쿄 사무소(태평양외국법사무변호사사무소) 소장(2002-2007)
- 특허법원 사법행정자문위원(2013-현재)
-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부회장(2014-현재)

조 병 규 변호사

T. 02.3404.0192 F. 02.3404.0802 E. byungkyu.cho@bkl.co.kr

- 법무법인 지평(2003-2011)
- 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(2011-현재)
-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「IFES 통일경제아카데미」 제1기 수료(2014)
-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 위원장(2017-현재)
-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 위원(2018-현재)

지 용 천 외국변호사

T. 02.3404.0245 F. 02.3404.7310 E. yongquan.chi@bkl.co.kr

- 중국 Beijing Han Hua Law Firm(1999-2000)
- 법무법인(유한)태평양 인턴(2003)
- 법무법인(유한)태평양(2004-2012)
- 중국 Global Law Office(2012-2015)
- 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(2015-현재)

최 병 호 변호사

T. 02.3404.0137 F. 02.3404.0806 E. byunggho.choi@bkl.co.kr

- 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(1992-현재)
- 미국 New York 주 변호사(1999)
-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(2002-현재)
-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(2007-2009)
-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(건설) 심사위원(2016-현재)

업무실적

- 평창올림픽 북한 대표단 참가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남북교류협력 관련 자문
- 국내외 기업 및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북제재 관련 자문
-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대한 북한지역 공단 운영 및 개성공단 공단 국제화 관련 자문
-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에 관련 자문
- 금강산관광 개발사업자에 대한 금강산 관광사업 전반과 관련한 자문
- 금강산관광 지역에서의 국내 유통업체의 위탁판매 관련 자문
- 북한과 합영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대북 투자 관련 자문
- 외국기업에 대한 북한내 외국환 거래 법령 관련 자문
- 중국에서 남북경협 사업을 진행 중인 국내기업에 대한 북한 인력 노무관리 관련 자문
- 북한에 대한 국내외 기업의 상표권 출원 관련 자문

업무실적

-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대북 경험자금 지원 관련 자문
- 정부에 대한 남북관계 및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입법안 관련 자문
- 대북사업 추진 외국기업에 대한 전략물자 통제 규범 관련 자문
- 국내기업에 대한 대북투자 신고 관련 자문
- 자원개발 분야 국내 연구소와 북한 자원개발법령에 대한 연구 협업 및 자문
- 정부 및 금융기관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업무 관련 자문
- 국내 교육분야 재단에 대한 남북한 교육분야 협력 추진 관련 자문
- 정부에 대한 남북 지식재산권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자문 및 연구
- 대북 인도적 사업 추진 재단에 대한 사업추진 체계 관련 자문



감사합니다.

이찬호 외국변호사
E. chanho.lee@bkl.co.kr
M. 010-5335-9748
T. 02-3404-7581